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 17. ----- 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03. 1. 17.
- 다. 상 정 일 자 : 2003. 1. 22.(제10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
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가. 제안이유

-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 세입이 없는 것을 감안 지속적인 투자 사업이 불필요함으로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일반회계로 편성 조치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본 조례 폐지건은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매각 등 재반사항이 완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투자활동이 불요하고 잉여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용함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조례폐지는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